#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( 제정) 2003.11.10 조례 제1650호 (전문개정) 2007.09.21 조례 제1805호

[2003.11.10 조례 제1650호]

(일부개정) 2015.09.25 조례 제2236호

(일부개정) 2017.06.05 조례 제2351호

(일부개정) 2017.12.20 조례 제2387호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·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자원봉사활동"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·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"자원봉사자"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자원봉사단체"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 인 또는 단체(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.)를 말한다.
- 4. "자원봉사센터"란 자원봉사활동 개발·장려·연계·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말한다.

제3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- 2. 지역사회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
- 3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- 4.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
- 5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- 6.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
- 7.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- 8.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
- 9.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
- 10. 문화・관광・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
- 11.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
- 12.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
- 13.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
- 14.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- 15.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

제4조(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)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 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
- 2.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

- 3.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의결
- 4.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
-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제2장 자원봉사센터

제5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)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자원봉사센터(이하"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센터의 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지역의 기관・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- 2.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・홍보
- 3.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
- 4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시범운영
- 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6.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
- 제7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.
  -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,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「민법」제40조 또는 제43조에 의한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 -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.
  -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
  -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 인으로 한다.
  -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-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**제8조 (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**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서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거나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며, 그 밖에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.
  -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 전임이 그만두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9조(센터의 지원)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및 강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6.5>
  -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제10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.

-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·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등록취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제7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등록한 후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및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·제출하는 경우
  - 2.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
  - 3.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라 포상 등을 받은 경우
  - 4.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
#### 제3장 자원봉사 진흥

- 제12조(자원봉사단체의 지원)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6.5>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 <신설 2017.6.5>
- 제13조(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)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, 자원봉사자의 날부 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기념행사
  - 2.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
  - 3.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
  - 4.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
  - 5.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- 제14조(보험가입) ① 군수는 센터 또는 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른다.
  - 1.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, 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2. <삭제 2017.12.20>
  - 3. 군수는 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제15조(포상·경력인정) ①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「함안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6.5>
  - ② 군수 또는 직장·학교 등 법인·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.
- 제16조(사기진작) 군수는 모범자원봉사자 또는 제15조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.

- 1. 표창 및 자원봉사상
- 2. 국내외 선진지 시찰
- 3. 공용시설이용 면제 및 할인
- 4.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7조(실비지급)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 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협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## 부칙 〈2015.9.25. 조례 제2236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 <2017.6.5. 조례 제235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 <2017.12.20. 조례 제238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